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3. 10 선고 2020가단2089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덕현

피 고 B

변론 종결 2021. 1. 27

판결 선고 2021. 3.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9. 7.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8. 28. 접수 제538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차212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6. 18. 'C은 원고에게 2,627,603원 및 그 중 2,500,000원에 대하여 2001.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2. 7. 5.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c의 모(母)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9. 7. 19.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와위 C, 소외 E, F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와 위 C, E, F는 2019. 7. 1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8. 28. 접수 제 5385 8호로 2019. 7.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위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1/4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고,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주문 기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 다29119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무자력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위 C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며,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가족들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부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 이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 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피고와 형제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위 C의 상속분인 1/4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위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C의 상속분인 1/4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황성 광

별지